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안 번호	2859

제출일자 : 2026. 8. 2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우리 군 금고인 NH농협은행과 IM뱅크의 협력사업비와 (재)달성청운장학재단해산에 따른 무상귀속된 잔여재산을 (재)달성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 총괄

- 현금 : 1,610,090,917원(군금고협력사업비&해산 공익법인 잔여재산)

○ 세부내역

가. 2026년 군 금고 협력사업비(현금) : 525,000,000원

- 농협은행 : 500,000,000원
- IM뱅크(대구은행) : 25,000,000원

나. (재)달성청운장학재단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 현금 : 1,085,090,917원

※ 비상장주식 5,000주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따라 달성교육재단으로의 무상증여

.

☞ (재)달성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안정적인 재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달성군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출연 심의요구서 : 붙임 참조

4.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붙임 참조

5. 참고자료 : 붙임 참조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table>
<tr><td>출 연
대 상</td><td>○ 기 관 명 : (재)달성교육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td></tr>
<tr><td>출 연
사업비</td><td>○ 출연 예정금액 : 1,610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 colspan="2">합 계</td><td>3,133</td><td>4,743</td><td>(증 1,610)</td></tr>
<tr><td rowspan="6">세부내역</td><td>기본재산(현금)</td><td>0</td><td>1,610</td><td></td></tr>
<tr><td>인건비</td><td>741</td><td>741</td><td></td></tr>
<tr><td>운영비</td><td>510</td><td>510</td><td></td></tr>
<tr><td>자산취득비</td><td>43</td><td>43</td><td></td></tr>
<tr><td>4차산업 등
교육지원사업</td><td>200</td><td>200</td><td></td></tr>
<tr><td>글로벌교육지원</td><td>1,800</td><td>1,800</td><td></td></tr>
</table></td></tr>
<tr><td>출 연
필요성</td><td>○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교육경쟁력 강화</td></tr>
<tr><td>근 거
법 령</td><td>○「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12조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3조, 제25조</td></tr>
<tr><td>사 업
부 서
의 견
(총평)</td><td>○ 민선8기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
○ 맞춤교육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가능</td></tr>
</table>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6년 출연금 1,610백만 원 추가 교부로 기본재산 적립 및 효율적인 재단 운영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3차 추경 예산(안) 재단 요구액	2026년 3차 추경 예산(안) 부서 검토액 (B)	2026년 출연액 (2차추경 기준) (A)	증감액 (B-A)
총 계		**4,743**	**4,743**	**3,133**	**1,610**
재단운영비		2,743	2,743	1,133	**1,610**
	기본재산 적립	1,610	**1,610**	**0**	**1,610**
	인력운영비	741	741	741	-
	기본운영비	349	349	349	-
	자산취득비	43	43	43	-
자체사업비		2,000	2,000	2,000	
	4차산업 등 교육지원사업	200	200	200	-
	글로벌 교육지원	1,800	1,800	1,800	-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재)달성교육재단	전화번호	053.644.9683
		홈페이지	http://dsef.or.kr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요연혁	2000. 4. 등기 2023. 5. (재)달성교육재단 변경등기	관계기관	교육부, 달성교육지원청 달성군, 한국장학재단

임원(17)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당연직)	2026. 7. 1 ~ 2030. 6. 30
	대표이사	이희갑	前 대구미래교육원 원장	2023. 8. 1 ~ 2027. 7. 31
	당연직 이사	방호현	달성군 기획전략국장	재임기간
	"	김형년	농협달성군지부장	2024. 1. 17 ~ 2028. 1. 16
	이사	이대현	농업	2025. 1. 1 ~ 2028. 12. 31
	"	신창섭	자영업	2025. 1. 1 ~ 2028. 12. 31
	"	석재추	前 옥포읍번영회장	2023. 7. 10 ~ 2027. 7. 9
	"	조성래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1. 1. 1 ~ 2024. 12. 31
	"	최상국	前 달성군 군의원	2023. 8. 1 ~ 2024. 12. 31
	"	심경용	前 대구학생문화센터 관장	2023. 8. 1 ~ 2024. 12. 31
	"	백윤태	구지면 장학회 이사	2023. 8. 1 ~ 2024. 12. 31
	"	김우식	달성군 체육회 이사	2023. 8. 1 ~ 2024. 12. 31
	"	이진규	달성군 체육회 이사	2023. 8. 1. ~2027. 7. 31.
	"	김영희	학부모회장 활동	2025. 1. 1. ~ 2028. 12. 31.
	"	김은주	학부모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2025. 1. 1. ~ 2028. 12. 31.
	감사	김대근	세무법인 양정 세무사	2025. 8. 1. ~2027. 7. 31.
	"	김영배	달성군 회계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달성군 교육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 ○ 각종 교육지원 사업 수행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현황 2026.1.1. 기준	기본재산	50,458,935,800
	예산액	5,038	19,119	19,370			
	지자체 지원액	2,391	13,301	11,782		보통재산	3,710,115,137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의 출연금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4. 12. 23., 1995. 7. 6.,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5. 12. 30.>